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The regulations for the basis of the drinking Water quality

제정 1984. 3. 31 보건사회부령 제774호

제정 1990. 1. 11 보건사회부령 제841호

제정 1991. 7. 4 보건사회부령 제871호

제정 1992. 12. 15 보건사회부령 제897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공동급수시설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음용수와 그 원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1.7.4]

제 2 조(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①수도법 제18조 및 공중위생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공동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91.7.4)

②제1항의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삭제('91.7.4)

제 3 조(원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삭제('92.12.15)

제 4 조(수질검사신청) 수도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7.4)

제 5 조(수도사업자에 의한 수질검사) ①수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업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91.7.4)

1. 정수장에서의 검사

가.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이상

나. 별표 1중 대장균군·일반세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이상

다. 별표 1의 전항목에 관한 검사: 매월 1회이상

2. 수도전에서의 검사

별표 1의 일반세균·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이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전에 대하여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검사외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1.7.4)

제 6 조(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공급될 음용수의 수질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91.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때에는 수원을 변경하거나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질기준을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을 별표 4의 검사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매 6월마다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91.7.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때에는 정수시설을 개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수질기준을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71.7.4)

제 7 조(건강진단) ①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매 3월마다 1회 행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수도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한 점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개정 '91.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수도의 취수장·정수장 또는 배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공동급수시설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 경우 수도는 공동급수시설로 본다.(개정 '91.7.4)

제 8 조(위생상의 조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2.12.15)

1. 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준하는 위생상 필요한 조치
2. 월 1회이상 간이급수시설 또는 공동우물주변에 대한 별표 5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의 실시

제 9 조(검사기자재의 확보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관리상 필요한 검사기자재·시약 및 소독약품을 확보·공급하여야 한다.(개정 '91.7.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할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검사결과와 보고)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전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 6월마다 실시한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시기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실설 '91.7.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수질검사방법·건강진단 및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6.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11)

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검사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동항동호 다목의 검사중 세레늄·다이아지논·파라티온·말라티온 및 페니트로티온에 대한 검사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검사중 카바릴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5 생략

[별표 1](개정 '91.7.4)

음용수이 수질기준(제2조 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보통한천배지에서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세균을 말한다)은 1ml중 100을 넘지 아니할 것.

나. 대장균군(그람음성의 무아포성의 단간균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만드는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을 말한다)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레늄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사. 6가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말라티온은 0.2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페니트로티온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내지 8.5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1\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15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 및 망간은 $0.3\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타.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황산이온은 $20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